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453 호

의 안 명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결연월일 2016. 7. 4.

주 문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7월 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 지>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안)

2016. 7.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추진 배경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4
①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산정으로 불합리한 부담 초래...	4
② 산정방식 미고지로 주민 알권리 침해	6
③ 지자체 간 연체료 산정방식 차이로 지역민 불만 우려.....	7
④ 연체규정과 운영이 불일치한 부당행정 빈발	7
IV. 개선 방안	8
①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 도입	8
② 요금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9
③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 해소	10
V. 조치 사항 및 기한	11
붙임: 각 지자체별 상하수도 연체요율 세부 현황.....	13

I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관련 민원

- 아파트관리비를 착오로 연체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 5%로 부과된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었음 ('15. 8. 국민신문고 민원)

□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

○ 공동주택관리비는 시·도 등에서 만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민 등이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은 관리규약 제·개정 시, 준칙과 달리 정한 사항은 별도 표기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상·하수도 요금**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연체일을 미 반영한 부당한 규정**이 상당수 존재

○ 공동주택관리비의 경우 17개 시·도 중 **13개 기관**에서 연체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관리규약 준칙 운영

* 연체 기간에 따라 월 2(2개월까지)~15%(9개월부터 12개월까지) 연체료 부과

○ **상·하수도 요금**은 과반수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 부과**

○ 반면, 공동주택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열(난방)요금** 등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산정됨**

※ 전기요금과 열요금은 '05년, 도시가스요금은 '14년에 일할방식이 도입됨

□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계획수립(5.2.) → 실태조사(5.3.~18.) → 기관협의(5.19.~6.1.)
→ 소위원회 의결(6.13.)

II 제도 현황

1 공동주택관리비 및 연체료 부과 제도

- 공동주택관리비는 시·도 등에서 마련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입주민의 의결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은 시·군·구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개정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비 항목에는 청소비·경비비·수선비·일반관리비 등 자체 관리비와 전기요금·열(난방)요금 등 외부 요금이 포함됨

※ 외부 요금인 전기요금과 열요금은 연체료를 일할방식으로 산정

< 공동주택관리비 세대 부과내역서(예시) >

자체 관리비 항목				외부 납부 요금 항목			
항 목	전월고지금액	당월고지금액	증감액	항 목	전월고지금액	당월고지금액	증감액
일반관리비	25,910	26,340	430	세대전기료	51,130	48,680	-2,450
경비비	11,122	10,140	-982	공동전기료	12,720	7,530	-5,190
청소비	12,260	10,220	-2,040	승강기전기	2,270	1,640	-630
소독비	740	740		TV수신료	2,500	2,500	
승강기유지비	3,740	3,740		세대수도료	25,990	32,700	6,710
수선유지비	1,120	840	-280	공동수도료	640	930	290
장기수선충당금	4,880	4,880		세대난방비	55,910	24,640	-31,270
보험료	1,020	1,020		기본난방비	4,260	4,260	
지능형홈네트워크	75	75		세대급탕비	32,760	35,950	3,190
대표회의운영비	740	1,110	370				
위탁관리수수료	537	537					
				합 계	250,320	218,470	-31,850

(세종시 공동주택 전용면적 59.93㎡ 기준)

- 연체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체 개월에 따라 차등하여 월할로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부과

※ 연체기간이 2개월까지인 경우 연체금의 2%, 4개월까지는 5%, 8개월까지는 10% 등의 연체요율이 적용됨

② 상·하수도 요금 및 연체료 부과 제도

- 상·하수도요금은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의 조례, 도 내 자치시·군은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부과

* 수도법 제38조 및 하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과 하수도 사용 요금 부과 관련 조례를 별도로 운영

※ 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서 산정하지만, 요금은 하나의 고지서에 통합하여 징수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예시)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영수증

내역	이체	미이체
상수도급	3561340	
하수도급	1780240	
지하수급		
물이용부담금	1294720	
합계	6636300	

비 공동주택 개인 대상 고지서

수도행정 서비스 현장"은 고객을 맞는 우리의 실천 약속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2016년 01월분)

구분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	지하수부담금
납기내	15150	6290	8320	0

- 연체료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일률적으로 연체요율을 반영*하여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초 납부액의 2~3%의 연체율을 적용

<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연체료 규정(예시)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연체료 규정]

- ◇ 수도사용자 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경기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연체료 규정]

- ◇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Ⅲ 문제점

1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산정으로 불합리한 부담 초래

□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산정

-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경기·충남·경남도를 제외한 13개 기관에서 연체일과 무관하게 불합리한 연체료 산정방식*을 적용

*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할 금액의 2%(2개월까지 연체)~15%(9개월에서 12개월 연체)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월할 적용

< 13개 광역지자체 표준관리규약 준칙 연체료 산정방식 >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 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부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 [민원사례 1] 아파트관리비 납부를 하루 연체했음. 그런데, 연체비는 왜 한달치를 다 받는지 의문임. 연체일자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과 방법이라고 생각됨('14. 4.)

[민원사례 2] 관리비 연체료를 연체시일과 상관없이 고정해 징수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데,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 개선해 주기 바람('16. 1.)

□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

- (상수도 요금) 9개 특별시(도)·광역시 중 3개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2~3%)로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식의 조례 운영

< 9개 특별시·광역시 상수도 연체료 산정방식 >

지자체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산정방식	일 할	<u>고정비율</u>	일 할	일 할	일 할	<u>고정비율</u>	일 할	일 할	<u>고정비율</u>

(자료: 각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 분석)

- 152개 시·군 중 79개(52.0%) 기관에서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 비율(2~3%)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적용

* 기관별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하수도 요금) 9개 특별시(도)·광역시 중 4개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2~3%)로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식의 조례 운영

< 9개 특별시·광역시 하수도 연체료 산정방식 >

지자체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산정방식	<u>고정비율</u>	<u>고정비율</u>	일 할	일 할	일 할	<u>고정비율</u>	일 할	일 할	<u>고정비율</u>

(자료: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 분석)

- 152개 시·군 중 105개(69.1%) 기관에서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 비율(2~3%)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적용

* 기관별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요청 민원도 접수되고 있음

* [민원사례]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되면 하루치만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하루 연체돼도 한달치가 연체료로 나오니 부당함.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일할 적용으로 바뀌면 좋겠음('16. 2.)

2 산정방식 미고지로 주민 알권리 침해

- 연체료 고지 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 설명없이 연체금액만 기재*

* 아래 관리비 납기후 연체료는 연체요율이 월 2%로 고정된 경우이며, 상수도 요금 등은 체납액의 3%로 고정된 비율이 적용됨

< 관리비 연체료 고지 예시 >

당월 부과액	218,470
할인 총계	
미납액	
미납연체료	
납기내금액	218,470
납기후연체료	4,370
납기후금액	222,840
납부기한	2016년 5월 2일 까지

연체기준 안내없이 연체료 고지

< 수도요금 연체료 고지 예시 >

구분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	지하수부담금
납기내	15,150	6,290	8,320	0
납기후	15,600	6,470	8,560	0
상수도	0	해제수료	0	과태료
				0

구체적 설명없이 연체료 고지

- 연체료 고지 미흡으로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조차도 연체료 부과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존재

* 관리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인 결과 연체료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③ 지자체 간 연체료 산정방식 차이로 지역민 불만 우려

- 연체료 산정을 월 단위 고정비율로 할 경우, 일할 산정대비 한달 기준 최고 31배의 차액이 발생
 - ※ 공동주택관리비 한 달 35만원 가구인 경우 충남지역(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 기준 일할 계산)은 1일 연체료가 225원이지만, 대전지역(표준관리규약 준칙 기준 월할 계산)은 7,000원이 부과됨
- 연체료 산정의 불합리로 인접지역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우는데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음

* **[민원사례]** 아파트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인데, 착오로 상·하수도요금을 며칠 연체하여 36만원을 연체료로 납부했음. 인근 안산시는 일할로 연체료를 납부하는데, 우리 시는 월할로 3%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연체일수대로 환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주기 바람('15. 5.)

④ 연체제도와 운영이 불일치한 부당행정 빈발

-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같은 연체료 부과방식이 적용되어 해당 조례의 내용도 동일해야 하지만 상이한 경우도 다수
 - ※ 9개 특별시·광역시 중 3개 기관, 152개 시·군 중 53개 기관이 상수도와 하수도 조례의 연체요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법규와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집행을 야기

- ※ **[사례 1]** 충북 ○○군은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를 실제 고정 비율 3%로 징수하지만, 조례에는 상수도의 경우 일할 계산, 하수도는 고정 3%로 규정
- ※ **[사례 2]** ○○광역시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를 실제로 일할로 징수하지만, 조례에는 상수도의 경우 일할 산정, 하수도는 고정 3%로 규정

IV 개선 방안

1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 도입

□ 공동주택관리비

○ 각 시·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연체료 일할 산정 방식 도입

※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연체료 일할계산을 명시, 충청남도는 연체요금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경기도 관리규약 예시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금 (제70조 관련)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금(%)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 연체요금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 충남도 관리규약 연체요금 적용례 >

☞ 연체요금 적용례

- 15일 연체시: 1개월 연체금액×연체요금(2%)×연체일수(15일)/해당월일수
- 1개월 15일 연체시: [1개월 연체금액×연체요금(2%)] + [1개월 연체금액×연체요금(2%)×연체일수(15일)/해당월일수]

후략

○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각 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

※ 경기도는 관리규약 개정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반영 당부

< 경기도 관리규약 개정 공지 예시 >



도정자료실

Home

경기도

통합자료실

통합자료실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8차) 개정 알림	조회수	7407
작성자	주택정책과	작성일	2015.08.20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 준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을 개정(2015. 8.21)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2015.10.21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준칙에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약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꼭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 요금

○ 상·하수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식 도입

- 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군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연체료 산출방법을 일할로 명시

※ 서울특별시 등은 상수도 요금 연체료를 일할 방식으로 청구, 경기도 용인시 등은 하수도 연체료를 일할 방식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 서울시 상수도 연체료 규정(예시) >

-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 경기용인시 하수도 연체료 규정(예시) >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

-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청구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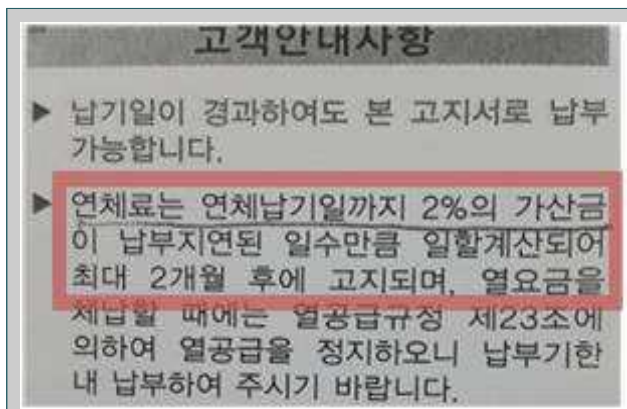
※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이 이미 도입된 기관은 별도 조치 불요

② 요금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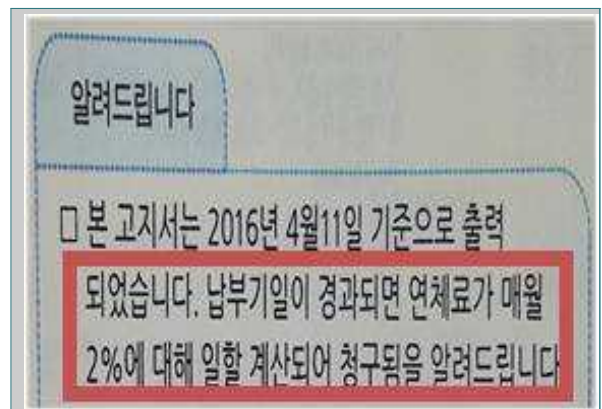
○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 구체적 연체료 산출기준을 알 수 있도록 요금 청구서에 명시하는 방안 강구

※ 연체료가 일할로 산정되는 전기요금, 열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요금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이 명시되어 고지됨

< 열요금 연체료 안내(예시) >



<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안내(예시) >



3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 해소

- (상·하수도 요금) 각 지자체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의 연체료 규정이 상호 부합되도록 개선

V 조치 사항 및 기한

1 조치 사항

□ (공동주택관리비) 17개 시·도

구분	조치 사항	비고
①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 도입	○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 도입 * 일할 방식이 기 도입된 4개 기관(서울·경기·경남·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 준칙에 반영
②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 구체적 연체료 산출기준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명시하는 방안 강구 - 구체적 산출기준 고지방법을 규정에 명시	
③ 홍보 강화	○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이 적용·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각 시·도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상·하수도 요금) 9개 특별시·광역시, 152개 시·군

구분	조치 사항	비고
①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 도입	①-1 상수도요금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 도입 * 일할 방식이 기 도입된 78개 기관(광역시 6, 시군 72)은 제외	각 기관 수도 급수 조례
	①-2 하수도요금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 도입 * 일할 방식이 기 도입된 51개 기관(광역시 5, 시군 46)은 제외	각 기관 하수도 사용 조례

구분	조치사항	비고
②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 구체적 연체료 산출기준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명시하는 방안 강구 - 구체적 산출기준 고지방법을 규정에 명시	각 기관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③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 해소	○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의 연체료 규정이 상호 부합되도록 개선	

2. 조치 기한 : '17. 6.

붙 임

각 지자체별 상·하수도 연체요율 세부 현황

- (특별시·광역시) 9개 광역상·하수도 운영 기관 중 상수도 요금은 3개 기관이, 하수도 요금은 4개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이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이 다른 기관도 3개임

연번	시·도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1	광주광역시	일할(3%)	<u>고정비율(3%)</u>	×
2	대구광역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3%)</u>	×
3	대전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2%)	1개월까지 일할(2%)	○
4	부산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5	서울특별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6	세종특별자치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3%)</u>	×
7	울산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8	인천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9	제주특별자치도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자료: 각 지자체 수도 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16.5.기준> 분석)

□ (시·군) 152개 상·하수도 운영 기초지자체 중 상수도 연체요율은 79개(52.0%) 기관이, 하수도는 105개(69.1%)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이며, 상·하수도 연체요금 부과기준이 다른 기관도 53개(34.9%)에 이릅니다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1	강원강릉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2	강원고성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3	강원동해시	일할(3%,1개월)	<u>고정비율(3%)</u>	×
4	강원삼척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5	강원속초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6	강원양구군	일할(2%)	<u>고정비율(3%)</u>	×
7	강원양양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8	강원영월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9	강원원주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0	강원인제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3%)</u>	×
11	강원정선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2	강원철원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5%)</u>	×
13	강원춘천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4	강원태백시	일할(2%,1개월)	<u>고정비율(3%)</u>	×
15	강원평창군	<u>고정비율(1.5%)</u>	<u>고정비율(3%)</u>	×
16	강원홍천군	일할(3%)	<u>고정비율(3%)</u>	×
17	강원화천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5%)</u>	×
18	강원횡성군	일할(3%,1개월)	<u>고정비율(3%)</u>	×
19	경기가평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2%)</u>	×
20	경기고양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21	경기과천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22	경기광명시	일할(2%,1개월)	<u>고정비율(3%)</u>	×
23	경기광주시	일할(2%,2개월)	일할(2%,1개월)	×
24	경기구리시	일할(2%)	일할(2%)	○
25	경기군포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3%)</u>	×
26	경기김포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27	경기남양주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28	경기동두천시	일할(2%)	<u>고정비율(2%)</u>	×
29	경기부천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30	경기성남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2%)</u>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31	경기수원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32	경기시흥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33	경기안산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34	경기안성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35	경기안양시	일할(2%,1개월)	고정비율(2%)	×
36	경기양주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37	경기양평군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38	경기여주시	고정비율(2%)	일할(2%,1개월)	×
39	경기연천군	일할(2%)	일할(2%)	○
40	경기오산시	일할(3%)	고정비율(3%)	×
41	경기용인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42	경기의왕시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43	경기의정부시	일할(2%)	일할(2%)	○
44	경기이천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45	경기파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6	경기평택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7	경기포천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8	경기하남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9	경기화성시	일할(2%)	고정비율(3%)	×
50	경남거제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51	경남거창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52	경남고성군	일할(2%)	일할(2%)	○
53	경남김해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54	경남남해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55	경남밀양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56	경남사천시	일할(2%)	일할(2%)	○
57	경남산청군	일할(2%)	일할(2%)	○
58	경남양산시	일할(2%)	일할(2%)	○
59	경남의령군	일할(3%)	일할(3%,1개월)	×
60	경남진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1	경남창녕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2	경남창원시	일할(3%)	고정비율(3%)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금	하수도 연체요금	동일 여부
63	경남통영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64	경남하동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65	경남함안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3%)</u>	×
66	경남함양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67	경남합천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68	경북경산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69	경북경주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0	경북고령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1	경북구미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u>1개월후 증가산</u>	×
72	경북군위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3	경북김천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4	경북문경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5	경북봉화군	<u>고정비율(3%)</u>	규정없음 (하수도요금 미부과)	해당없음
76	경북상주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7	경북성주군	일할(3%)	<u>고정비율(3%)</u>	×
78	경북안동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79	경북영덕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80	경북영양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81	경북영주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2%)</u>	○
82	경북영천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2%)</u>	○
83	경북예천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84	경북울릉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85	경북울진군	일할(2%)	<u>고정비율(3%)</u>	×
86	경북의성군	<u>고정비율(3%)</u>	일할(2%,1개월)	×
87	경북청도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5%)</u>	×
88	경북청송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89	경북칠곡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90	경북포항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91	전남강진군	일할(2%)	<u>고정비율(3%)</u>	×
92	전남고흥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93	전남곡성군	일할(2%)	일할(2%)	○
94	전남광양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95	전남구례군	미규정	<u>고정비율(3%)</u>	×
96	전남나주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97	전남담양군	일할(2%)	<u>고정비율(2%)</u>	×
98	전남목포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99	전남무안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00	전남보성군	일할(3%)	<u>고정비율(3%)</u>	×
101	전남순천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02	전남신안군	일할(2%,1개월)	<u>고정비율(3%)</u>	×
103	전남여수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04	전남영광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05	전남영암군	<u>고정비율(3%)</u>	일할(2%,1개월)	×
106	전남완도군	일할(3%)	<u>고정비율(3%)</u>	×
107	전남장성군	일할(2%)	<u>고정비율(3%)</u>	×
108	전남장흥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09	전남진도군	일할(3%)	<u>고정비율(3%)</u>	×
110	전남함평군	일할(2%)	일할(2%)	○
111	전남해남군	일할(2%)	일할(2%,1개월)	×
112	전남화순군	일할(2%)	<u>고정비율(3%)</u>	×
113	전북고창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2%)</u>	×
114	전북군산시	일할(3%)	<u>고정비율(3%)</u>	×
115	전북김제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16	전북남원시	일할(3%)	일할(2%)	×
117	전북무주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18	전북부안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19	전북순창군	일할(3%,1개월)	<u>고정비율(3%)</u>	×
120	전북완주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21	전북익산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22	전북임실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23	전북장수군	일할(3%)	일할(3%)	○
124	전북전주시	일할(3%)	일할(3%)	○
125	전북정읍시	일할(3%)	<u>고정비율(2%)</u>	×
126	전북진안군	일할(2%,1개월)	일할(2%)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127	충남계룡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28	충남공주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29	충남금산군	일할(1.5%)	<u>고정비율(3%)</u>	×
130	충남논산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31	충남당진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32	충남보령시	일할(3%,1개월)	<u>고정비율(3%)</u>	×
133	충남부여군	일할(2%,1개월)	일할(2%)	×
134	충남서산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35	충남서천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36	충남아산시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2%)</u>	○
137	충남예산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38	충남천안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39	충남청양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40	충남태안군	<u>고정비율(3%)</u>	일할(2%)	×
141	충남홍성군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42	충북괴산군	일할(3%,1개월)	<u>고정비율(3%)</u>	×
143	충북단양군	일할(3%,1개월)	<u>고정비율(3%)</u>	×
144	충북보은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2%)</u>	○
145	충북영동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46	충북옥천군	일할(3%,1개월)	일할(3%)	×
147	충북음성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3%)</u>	×
148	충북제천시	일할(2%)	일할(2%)	○
149	충북증평군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150	충북진천군	<u>고정비율(2%)</u>	<u>고정비율(2%)</u>	○
151	충북청주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52	충북충주시	<u>고정비율(3%)</u>	<u>고정비율(3%)</u>	○

(자료: 각 지자체 수도 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16.5.기준> 분석)